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이 약관은 2025년 06월 09일부터 시행합니다.

현행	개정(안)	비고
제 1 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조(설명의무 등)** ① (생략) ② 회사는 일중매매거래(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고지한다. ③ (생략) ④ 고객은 글로벌거래(시장의 정규거래시간 거래 이외에 해당일 18 시부터 다음 날 5 시까지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 약관과 함께 <별첨 2>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약정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 1 조(약관의 적용 등)** ① 이 약관은 고객과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장의 거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규거래시간 : 당일 8 시 45 분부터 당일 15 시 45 분까지. 다만, 기초자산의 특성, 거래 수요 및 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시장별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야간거래시간 : 전일 18 시부터 당일 6 시까지. 이 경우 야간거래시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조(설명의무 등)** ① (생략) ② 회사는 일중매매거래(같은 거래일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같은 거래일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고지한다. ③ (생략) ④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국외에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다른 외국투자자의 파생상품거래를 일괄하여 주문·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계좌(이하 "외국인 통합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중략)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P. 2 조문 정비

제 5 조(위탁증거금의 예탁) ① 고객은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첨 1>에서 정하는 현금예탁필요액(현금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위탁증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위탁증거금은 현금을 대신하여 대용증권(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화로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행세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인 고객 중 회사가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및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적격기관투자자"라 한다)는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시행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위탁증거금(이하 "사후위탁증거금"이라 한다)으로 예탁할 수 있다. 다만,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에 대하여는 그 밖의 거래보다 낮은 수준으로 시행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사후위탁증거금으로 회사에 예탁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사후위탁증거금계좌는 다음 각 호의 파생상품계좌로 구분한다. 1.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제 2 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낮은 수준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를 위한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⑤ (생략) **제 6 조(수탁의 거부)** ① (생략) 1~7. (생략) 8.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글로벌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9. 제 8 조에 따라 회사가 (중략) (이하 생략)	**제 5 조(위탁증거금의 예탁)** ① 고객은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첨>에서 정하는 현금예탁필요액(현금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위탁증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위탁증거금은 현금을 대신하여 대용증권(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화로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행세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인 고객 중 회사가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및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적격기관투자자"라 한다)는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시행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위탁증거금(이하 "사후 위탁증거금"이라 한다)으로 예탁할 수 있다. 다만,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에 대하여는 그 밖의 거래보다 낮은 수준으로 시행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사후위탁증거금으로 회사에 예탁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사후위탁증거금계좌는 다음 각 호의 파생상품계좌로 구분한다. 1.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제 2 항 본문에 따라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제 2 항 단서에 따라 낮은 수준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차익거래 또는 헤지 거래를 위한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⑤ (생략) **제 6 조(수탁의 거부)** ① (생략) 1~7. (생략) ~~8.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글로벌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8. 제 8 조에 따라 회사가 (중략) (이하 생략)	P. 3~4 조문 정비

10.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이하 “협회규정”이라 한다) 및 거래소 규정에 따라 투자성향이 적합하고 파생상품 등 (중략) (이하 생략) 11. 위탁자가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날부터(그 날에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한 계좌의 경우에는 투자 일임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 한다) 회사가 거래의 위탁을 받은 날까지 회사별로 산출한 미결제약정 (중략) (이하 생략) 12.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파생상품계좌에서 (중략) (이하 생략) 13. 헤지전용계좌의 위탁자로부터 시행세칙에 따른 헤지연계주권계좌에 예탁한 예탁자산의 평가금액을 초과하는 (중략) (이하 생략) 14. 그 밖에 규정 또는 시행세칙에서 수탁의 거부 사항으로 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9.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이하 “협회규정”이라 한다) 및 거래소 규정에 따라 투자성향이 적합하고 파생상품 등 (중략) (이하 생략) 10. 위탁자가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거래일부터(그 거래일에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한 계좌의 경우에는 투자 일임계약이 종료된 거래일의 다음 거래일로 한다) 회사가 거래의 위탁을 받은 거래일까지 회사별로 산출한 미결제약정 (중략) (이하 생략) 11.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파생상품계좌에서 (중략) (이하 생략) 12. 헤지전용계좌의 위탁자로부터 시행세칙에 따른 헤지연계주권계좌에 예탁한 예탁자산의 평가금액을 초과하는 (중략) (이하 생략) 13. 그 밖에 규정 또는 시행세칙에서 수탁의 거부 사항으로 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P. 5 조문 정비
제 7 조(기본예탁금의 예탁) ① 미결제약정이 없는 고객이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가 고객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를 사전에 선물. 옵션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제 7 조(기본예탁금의 예탁)** ① 미결제약정이 없는 고객이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가 고객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를 사전에 선물. 옵션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제 8 조, 제 9 조 (생략)	**제 8 조, 제 9 조** (생략)	
제 10 조(위탁증거금의 일별 추가예탁) ① 고객(사후위탁증거금계좌는 제외한다)은 정규거래시간 종료(이하 “장종료”라 한다) 시점을 기준으로 예탁총액 또는 예탁현금이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음 영업일 12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12시전에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 등으로 위탁증거금 수준을 충족한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 예탁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제 10 조(위탁증거금의 일별 추가예탁)** ① 고객(사후위탁증거금계좌는 제외한다)은 정규거래시간 종료(이하 “장종료”라 한다) 시점을 기준으로 예탁총액 또는 예탁현금이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그 부족액이 발생한 거래일의 다음 영업일 12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12시전에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 등으로 위탁증거금 수준을 충족한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 예탁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제 10 조의 2(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① ② ③ (생략) ④ 고객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을 <별첨1>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 2(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① ② ③ (생략) ④ 고객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을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 3(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해제) ① (생략) ② (생략) 1. 예탁총액이 사전위탁증거금액 이상인 경우(글로벌 거래시간은 제외한다) 2. 3. (생략) 4. 장종료 직전의 장중예탁총액부족액에 대하여 위탁자가 추가예탁, 반대거래 또는 대용증권 매도로 해당 부족액을 충족하는 경우. 다만 글로벌거래시간 동안의 반대거래 또는 대용증권 매도는 제외한다.	**제 10 조의 3(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해제)** ① (생략) ② (생략) 1. 예탁총액이 사전위탁증거금액 이상인 경우 2. 3. (생략) 4. 장종료 직전의 장중예탁총액부족액에 대하여 위탁자가 추가예탁, 반대거래 또는 대용증권 매도로 해당 부족액을 충족하는 경우
제 11 조(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등 불이행시의 조치) ① 회사는 고객이 제10조제3항, 제10조제4항 및 제10조의 2제4항에서 정하는 예탁시한까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 2.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은 대용증권 또는 외화의 매도 ② (생략) 1. (생략) 가. 매도호가의 경우 직전약정가격[당일 정규거래 시간의 결제월종목의 약정가격 중 가장 최근에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으로 체결된 약정가격(선물스프레드거래 체결로 인한 약정가격을 제외하며, 체결된 약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소 규정에 따른 기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우선매수호가(주문접수 시점에 가장 높은 매수주문의 가격으로 주문하는 호가를 말한다)의 가격(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으로 한다) 및 그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뺀 9 개의 가격	**제 11 조(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등 불이행시의 조치)** ① 회사는 고객이 제10조제3항, 제10조제4항 및 제10조의 2제4항에서 정하는 예탁시한까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야간거래시간 동안에는 제 1 호의 조치는 제외한다. 1.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 2.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은 대용증권 또는 외화의 매도 ② (생략) 1. (생략) 가. 매도호가의 경우 직전약정가격[해당 거래일 정규거래 시간의 결제월종목의 약정가격 중 가장 최근에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으로 체결된 약정가격(선물스프레드거래 체결로 인한 약정가격을 제외하며, 체결된 약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소 규정에 따른 기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우선매수호가(주문접수 시점에 가장 높은 매수주문의 가격으로 주문하는 호가를 말한다)의 가격(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으로 한다) 및 그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뺀 9 개의 가격

나. (생략) (이하 생략) **제 11 조, 제 12 조** (생략) **제13조(미납수수료 등 발생시 연체료 부담)** ① 회사는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별첨1>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예탁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대신 내어 주었거나 고객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별첨1>에서 정하는 요율의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③ (생략) **제14조(과다호가부담금)** ① 고객이 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미니코스피200선물 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코스피200옵션거래 또는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를 함에 있어 당일 정규거래시간 동안 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과도한 호가건수를 제출한 경우 거래소에 과다호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과다호가부담금을 받아 거래소에 납부한다. ② (생략) **제 15 조** (생략) **제 16 조(대용증권의 이용제한)** 회사는 고객이 “고객은 현재 또는 장래에 예탁받는 대용증권을 회사가 거래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거나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지정결제회원에 예탁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회사에 사전에 제출한 때에는 예탁받은 대용증권을 거래에 관한 거래증거금 또는 매매전문회원 증거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시가	나. (생략) (이하 생략) **제 11 조, 제 12 조** (생략) **제 13 조(미납수수료 등 발생시 연체료 부담)** ① 회사는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예탁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대신 내어 주었거나 고객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의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③ (생략) **제14조(과다호가부담금)** ① 고객이 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미니코스피200선물 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코스피200옵션거래 또는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를 함에 있어 해당 거래일의 야간거래시간 또는 정규거래 시간(각 거래시간의 시가단일가호가시간을 포함한다) 동안 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과도한 호가건수를 제출한 경우 거래소에 과다호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다호가부담금은 각 거래시간 별로 별도 계산되어 부과되며,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과다호가부담금을 받아 거래소에 납부한다. ② (생략) **제 15 조** (생략) **제 16 조(대용증권의 이용제한)** 회사는 고객이 “고객은 현재 또는 장래에 예탁받는 대용증권을 회사가 거래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거나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지정결제회원에 예탁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회사에 사전에 제출한 때에는 예탁받은 대용증권을 거래에 관한 거래증거금 또는 매매전문회원 증거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시가 대용증권을 거래증거금으로 이용시 해당 대용증권의 예탁 및 인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따른다.	

대용증권을 거래증거금으로 이용시 해당 대용증권의 예탁 및 인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 규정에 따른다.		
제 21 조(예탁금이용료의 지급 등) ① (생략)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https://securities.koreainvestment.com≫이용안내≫업무이용안내≫수수료안내≫예탁금이용료), 온라인 거래를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 22 조 ~ 제 25 조** (생략) **제 26 조(고객의 권리행사의 신고)** ① 고객은 옵션거래에 따른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행사일의 장 종료 후부터 30 분 이내에서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회사에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	**제 21 조(예탁금이용료의 지급 등)** ① (생략)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https://securities.koreainvestment.com≫이용안내≫업무이용안내≫수수료안내≫예탁금이용료) **제 22 조 ~ 제 25 조** (생략)	P. 9 조문 정비

④ 실물인수도에 따른 인도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하자의 의혹이 있을 경우 인수자인 고객은 최종결제일로부터 7 거래일 이내에 회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 27 조** (생략) **제 28 조(통화선물거래의 인수도결제)** ① 회사는 최종거래일의 장종료 후부터 당일 중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수량·통화의 수수액·최종결제대금(최종결제가격에 최종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인수도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한다. ② (생략) ③ 제 2 항에 따른 회사와 고객의 인수도결제시한은 최종결제일의 12 시 이내에서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④ ⑤ (생략) **제 29 조** (생략) **제 30 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③ ④ ⑤ (생략)	**제 26 조(고객의 권리행사의 신고)** ① 고객은 옵션거래에 따른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행사일의 장 종료 후부터 30 분 이내에서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회사에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 ④ 실물인수도에 따른 인도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하자의 의혹이 있을 경우 인수자인 고객은 최종결제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회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 27 조** (생략) **제 28 조(통화선물거래의 인수도결제)** ① 회사는 최종거래일의 장종료 후부터 당일 중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수량·통화의 수수액·최종결제대금(최종결제가격에 최종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인수도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한다. ② (생략) ③ 제 2 항에 따른 회사와 고객의 인수도결제시한은 최종결제일의 12 시 이내에서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④ ⑤ (생략) **제 29 조** (생략) **제 30 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제31조 (생략) **제 32 조(위탁수수료 등)** 회사는 거래의 위탁을 받아 거래가 성립되거나 선물거래의 최종결제 또는 옵션거래의 권리행사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고객으로부터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제 33 조 ~ 제 38 조** (생략) **제 39 조(관계법규등 준수)** ① 고객(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 최종투자자를 포함한다)과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② (생략) **제 40 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41 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③ ④ ⑤ (생략) **제31조** (생략) **제 32 조(위탁수수료 등)** 회사는 거래의 위탁을 받아 거래가 성립되거나 선물거래의 최종결제 또는 옵션거래의 권리행사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고객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제 33 조 ~ 제 38 조** (생략) **제 39 조(관계법규등 준수)** ① 고객(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 최종투자자를 포함한다)과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거래소 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② (생략) **제 40 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41 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66 조의 2 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 · 무선 · 화상통신 ·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신 설 >	**부 칙(2025.06.09)** 이 약관은 2025년 06월 09일부터 시행한다.	P. 15
<별첨1> 1. 제 5 조제 1 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중략) 2. 제 5 조제 1 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현금예탁필요액은 다음과 같다. (중략) 3. 제 5 조제 2 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중략) 4. 제 7 조제 1 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제 10 조제 1 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중략) 6. 제 10 조의 2 제 4 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한은 다음과 같다.] (중략) 7. 제 13 조제 1 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중략) 8. 제 13 조제 1 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중략) 9. 제 26 조제 1 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중략) 10. 제 28 조제 1 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중략) 11. 제 28 조제 3 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중략) 12. 제 32 조제 1 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위탁수수료는 회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koreainvestment.com>이용안내>업무 이용안내>수수료안내>온라인 매매/영업점 매매 에 게시됩니다.	**<별첨>** 1. 제 5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중략) 2. 제 5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현금예탁필요액은 다음과 같다. (중략) 3. 제 5 조제 2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중략) 4. 제 7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제 10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중략) 6. 제 10 조의 2 제 4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은 다음과 같다.] (중략) 7. 제 13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중략) 8. 제 13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중략) 9. 제 26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중략) 10. 제 28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중략) 11. 제 28 조제 3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중략) 12. 제 32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위탁수수료는 회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koreainvestment.com>이용안내>업무 이용안내 >수수료안내)에 게시됩니다.	P. 16 조문 정비

<별첨 2> (이하 생략) ※ 해당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별첨 2>**~~ (이하 생략) ※ 해당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4항에 따라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P. 17 조문 정비